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52 발의연월일: 2020. 12. 30.

발 의 자: 곽상도·배준영·한기호

김도읍・강기윤・권명호

구자근・金炳旭・이종배

김성원 · 김희곤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사립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 중 일부를 관할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통하여 담보로 제공한 후 해당 채무를 갚지 못하여학교법인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되거나 완결되어도 학교법인이 해당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할청이 공공성이 강한 학교법인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수 있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에 대한 관할청의 관리·감독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재산의 소송절차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⑤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
	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
	결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
	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